

畜産發展의 農民主導化를 위한 自助金制度

— 畜産民主化의 지름길 —



박 영 인
(USFGC 한국회장)

한국 축산업은 1960년대 이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산업이다. 그러나 공급측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낙관적인 수요와 불확실한 공급 전망속의 한국 축산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

- 1) 축산에 이용할 수 있는 국내생산 자원의 한정성
- 2) 우수 종축, 배합사료 원료 등의 높은 해외 의존성
- 3) 생산, 가공, 유통, 소비구조의 비효율성
- 4) 기술 및 경제현실에 부합한 정책의 결여성
- 5) 생산자 자구대책의 비조직성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간다면 한국 축산업은 계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느 수준까지의 확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사양산업의 비운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경험한 바 있는 소 값 폭락, 우유수급 불균형, 돼지 파동, 브로일러투기, 산란계 체중 등의 고질적 악순환도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단기치유나 자생요법에만 의지하다 보면 그 축산업은 국적불명의 유망아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하다.

한국 축산업을 어떻게 하면 기초가 튼튼한 현대산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다. 그 내용의 골자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산업 각 부문의 합리적 구조개선과 적절한 정책실현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은 물론, 생산자와 관련기업의 소득도 안정시켜 축산업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 산업주체인 축산농민만이 축산과 더불어 흥망성쇠를 함께 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까닭에 축산관련 모든 부분을 종합 조정 하는 산업 발전의 주체구실을 해야 한다. ”

과연 누가 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모든 부문을 조정해 나갈 것인가?

바로 그것이 문제다. 정부? 연구기관? 학계? 관련기업? 유통상인? 소비자? 생산자 농민? 아니면 축산 이외의 다른 산업? 또는 외국의 관련부문?

— 畜産民主化의 概念 —

축산민주화란 “畜産發展의 農民主導化”를 약칭한 용어다.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농기업 및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축산발전을 위해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종합조정이 축산농민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연유한 표현이다. 여기에는 축산정책도 국내외적 산업현실에 입각하여 형성, 결정되고 축산농민은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농업의 주인은 농민이다. 생산자는 그 산업에 가장 밀도있게 유착되어 있는 산업주체다. 따라서 축산농민은 축산업의 주인으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을 담당하여 마땅하다. 축산물의 소비자와 축산업의 연관산업 및 지원기관은 모두가 축산발전의 객체에 불과하다. 산업주체인 축산농민만이 축산과 더불어 흥망성쇠를 함께 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까닭에 축산관련 모든 부문을 종합 조정하는 산업발전의 주체구실을 해야 한다.

농민의 부업으로 그 중요성이 크지 않은 산업 초기의 축산업은, 정부주도적인 하향식 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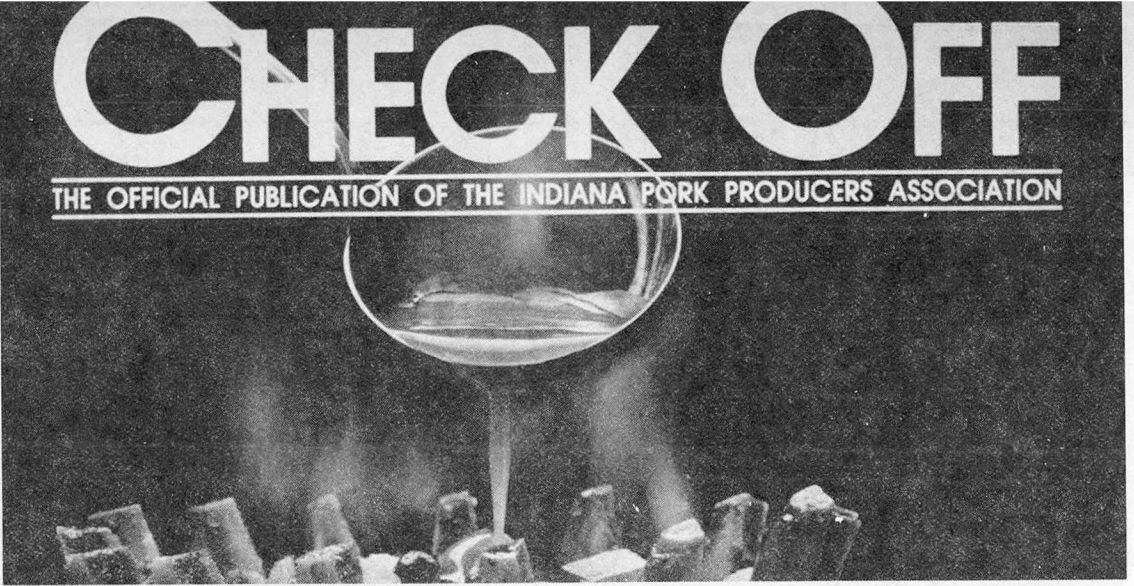
략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르면, 농민 주도적인 상향식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산업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증산과 농가소득 정책은 물론 수급균형과 소비자 보호 정책도 긴요함을 뜻한다.

산업초기의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행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초기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다. 이때 생산자 농민은 그 정책에 순응·추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산업이 일단 성장하게 되면 정부의 본래적 정책입장과 농민 및 농기업의 산업적 입장이 포괄적으로 수용되는 정책개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자유경제체제의 산업정책이란 공익실현이라는 국가적 목적과 이윤추구라는 산업의 기본목적들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축산발전 정책은 아직도 초기 산업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 그동안 크게 성장하였고 어느 부분은 선진된 산업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는데도, 정책은 여전히 보호육성의 유치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정책당국의 오랜 관습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 생산자 농민과 연관산업의 정부의존적 타성에서 야기되는 과도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축산농민은 산업현실에 적합한 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 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CHECK OFF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DIANA PORK PRODUCERS ASSOCIATION



축산민주화는 산업자체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정치 및 경제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책을 포함한 축산발전의 모든 숙제가 생산자 농민주도적으로 조정, 해결되는 산업체제의 정립이 시급한 것이다.

— 主權在民의 實現 —

축산민주화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본질과 “국민주권”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규정을 실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축산농민이 산업의 주인으로 축산업 발전을 주도한다는 것은 산업인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더구나 경제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배분의 공평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생산자는 주어진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생산자의 경제적 불리성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권재민과 자유,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은 목적이요 국가는 수단이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산업이고 누구에 의한 정책인가가 매우 중요시된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현대산업사회의 분화현상은 부문별 전문화와 조직화를 통한 이익집단의 출현을 촉구하여 모래알과 같은 개개인의 힘을 집결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8세

축산민주화란, 곧 생산자 농민이 이익집단을 결성,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는 개인발견의 시대, 19세기는 사회발견의 시대, 20세기는 집단발견의 시대라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형성에는 공무원, 전문가, 정당, 국회, 이익집단, 여론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 가운데서 이익집단이란 특정문제에 대하여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 및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집단을 일컫는다. 이들은 전통적인 관료적 권위주의의 병폐를 타파하는데 앞장서기도 한다. Fred Riggs가 지적하는 관료주의의 병리현상에는 비능률성, 형식주의, 문서주의, 획일주의, 까다로운 절차(red tape), 무사안일주의, 독선주의, 비밀주의, 계급의식, 자기보호, 오만성, 불친절, 비인간화 등이 있다. 산업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이러한 관료적 병리성이 산업인의 집단에 의하여 최대한 제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의 축산민주화는 헌법 제124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농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한다”의 농민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 농민이 이익집단을 결성하여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정책결

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과 국가의 목적이 부합되고 생산자 농민의 이익도 보장되는 민주적 축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 農民의 主導力 涵養 —

현대산업사회에서 농업부문이 타산업 부문에 비하여 발전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종사자의 결사력 부족과 지도자의 빈곤에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농민은 다수 분산의 소규모 경영자가 대부분인 까닭에 서로 모아 무슨 일을 도모하기가 어렵고, 또 농업부문은 성과가 크지 않아 이에 앞장서려는 농민대표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축산부문은 지금 매우 다이내믹하고 다른 농업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전래의 일반농업과는 달리 소수의 농민이 집중적인 대규모 경영을 지향하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통적 농민이 축산의 전문화 또는 규모화를 시도하는가 하면 비농업자본도 축산부문에 투입되어 축산기업화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민의 축산과 기업인의 축산이 공존하는 가운데 축산부문의 이익집단 형성이 용이하게 되고 지도력 있는 축산농민도 나타나고 있다.

축산의 민주화는 강력한 이익집단의 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다수농민의 비조직적이고 분산된 힘은 정부주도하의 축산업체제에서 항상 수동적인 불평만을 하는데 모두 소모될 뿐이다. 축산농민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축산의 품목별 이익집단을 통한 효율적 단체활동이 절대 필요하다. 관심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 공통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축산민주화는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다.

한국축산업에는 축산농민의 단체가 그런대로



조직되어 있다. 품목별 협회와 지역 또는 업종별 협동조합도 있으며 친목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명칭의 농민조직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당장 축산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농민의 이익집단은 없다. 그 조직, 구성, 기능, 재원면으로 보아 대부분의 단체가 정부주도하의 정책대행 또는 보조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축산농민의 단체는 하루속히 민주화 추진을 위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자기 산업을 자기가 발전시켜 자구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국가이익에도 기여하는 축산민주화 실현의 저력함양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단체를 적절하게 개편, 정비, 강화한다면 농민 주도의 축산발전체제가 반드시 확립될 것으로 믿는다.

— 自助金の 制度化 —

농민주도적인 축산발전을 획책하려면 먼저 강력한 농민의 이익집단이 조직되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농민이익의 대변단체는 목적하는 바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 스스로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 재원이란, 국가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듯이 농민단체의 활동비용은 해당농민이 부담하는, 그런 성격의 부과금 것이

다. 이것이 바로 자조금이며 농민이익을 보호하고 축산발전을 주도하는 바탕이 되어줄 수 있다.

자조금은 민주적 농민조직의 자발적인 부과금이다. 그 목적은 농민의 조직화에 의한 자구대책 강구와 장기적인 산업발전을 주도하는데 있다. 따라서 자조금은 수익자 부담금이며 무임편승자를 배제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로부터 공평하게 극소액을 거래시점에서 자동공제하는 제도적 기금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조금은 농민단체가 관리하고 주로 조사, 연구, 교육, 상품화, 유통, 소비촉진, 정책지원, 산업발전 등에 사용된다.

한국축산업은 지난 몇 해동안 자조금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고 이제는 그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단계에 와 있다. 몇 개의 품목단체가 이에 앞장서 있고,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변인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자조금의 제도화는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참여농민의 민주적 합의과정과 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역시 시간이 걸려야 하는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또 자조금제도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과품목과 비율, 징수 의무자, 사업내용, 운영주체 등 세밀한 연구, 교육 및 의견절충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자조금이 제도화 되어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축산발전의 농민주도화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농민 스스로가 다같이 부담한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활동이므로 농민을 위한 진정한 이익대변은 물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제거에도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합리적 기능 수행과 농기업을 과점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학술, 연구기관의 적절한 지원요청과 장단기적 정책의 효율화를 종합 조정하는 구심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축산민주화의 지름길인 것이다.

전문 종돈장



130일 → 90kg, 등지방 1.5cm라면!

우리는 수입원종돈만을 생산하는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엄격한 자체선발을 거쳐 자랑스러운 돼지만 판매합니다.

정원 종돈장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산1-115번지
 분양사무실 : 동물약품 정약원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25-7번지 ☎ 32-1250
 대표 : 수의사 김 태 현